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개발사업에 포함하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과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이 같은 부지에 위치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규모 건축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안 제9조제1항)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건축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통합수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8항)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에 대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경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별표2)

대규모 건축물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점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제14호의 경우에는
제14호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제14호 각 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
적의 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국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수립권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수립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는 사업

가. 공동주택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라. 교육연구시설

마. 업무시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 계획승인 이전까지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

마. 업무시설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수립권자”라 한다)-

-----.

⑤ 수립권자-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수립권자는 제1항제14호에 해당되는 사업이 제1항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부지 안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신설>

를」	를」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
「건축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을 위한 허가 전까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연 락 처	(044) 201-3812